

#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

Code for Construction Supervision of Urban Gas Supply Facilities

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 · 의결 : 2021년 11월 19일

산업통상자원부 승인 : 2022년 1월 10일



## 가 스 기 술 기 준 위 원 회

**위 원 장**

최 병 학 : 강릉원주대학교 교수

**부위원장**

장 기 현 : 귀뚜라미 전무

**당 연 직**

홍 순 파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

곽 채 식 :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

**고압가스분야**

최 병 학 : 강릉원주대학교 교수

송 성 진 : 성균관대학교 부총장

이 범 석 : 경희대학교 교수

윤 춘 석 : (주)한울이앤알 대표이사

안 영 훈 : (주)한양 부사장

**액화석유가스분야**

안 형 환 : 한국교통대학교 교수

권 혁 면 : 연세대학교 연구교수

천 정 식 : (주)E1 대표이사

강 경 수 :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

이 용 권 : (주)대연 부사장

**도시가스분야**

신 동 일 : 명지대학교 교수

김 정 훈 :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수석

정 인 철 : (주)예스코 이사

장 기 현 : 귀뚜라미 전무

**수소분야**

이 광 원 : 호서대학교 교수

정 호 영 : 전남대학교 교수

강 인 용 : 에이치엔파워(주) 대표

백 운 봉 :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

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2조의2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7조의2,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7조의5 및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」 제48조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으로,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


## KGS Code 제·개정 이력

종목코드번호	KGS GC252 2022
코 드 명	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

제 · 개 정 일 자	내 용
2008.12.31	제 정 (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-381호)
2009.12. 2	개 정 (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-454호)
2011. 1. 3	개 정 (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-489호)
2013.10.14	개 정 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-279호)
2014.10. 6	개 정 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-510호)
2015. 8. 7	개 정 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-436호)
2017. 1. 9	개 정 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-003호)
2017. 9.29	개 정 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-475호)
2018. 8.10	개 정 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-419호)
2022. 1.10	개 정 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-012호)
	- 이 하 여 백 -



## 목 차

1. 일반사항 .....	1
1.1 적용범위 .....	1
1.2 기준의 효력 .....	1
1.3 용어정의 .....	1
2. 시공감리기준 .....	2
2.1 시공감리 대상 .....	2
2.1.1 전공정시공감리 대상 .....	2
2.1.2 일부공정시공감리 대상 .....	2
2.2 시공감리 방법 .....	2
2.2.1 시공감리 준비 .....	2
2.2.2 시공감리 시행 .....	3
2.2.3 시공감리 마무리 .....	4
2.3 그밖에 시공감리 기준 .....	6



##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 (Code for Construction Supervision of Urban Gas Supply Facilities)

### 1. 일반사항

#### 1.1 적용범위

이 기준은 「도시가스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에 따른 시공감리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# 1.2 기준의 효력

**1.2.1** 이 기준은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·의결(안전번호 제2021-9호, 2021년 11월 19일)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-12호, 2022년 1월 10일)을 받은 것으로 법 제17조의5제항에 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
**1.2.2**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별표 5, 별표 6, 별표 6의3,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15.8.7, 17.1.9 18.8.10>

#### 1.3 용어정의

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**1.3.1** “시공감리”란 도시가스공급시설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도지사가 시공감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도지사로부터 시공감리권한을 위탁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명의와 권한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  
<개정 17.9.29>

**1.3.2** “주요공정시공감리”란 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중 배관의 시공시 다음에 해당하는 시공과정 또는 공정에 대하여 공사현장에서 확인감리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14.10.6>

- (1)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관계자의 자격, 인적사항 등의 적정 여부
- (2) 시공자가 유자·보존하는 각 공정별 시공기록의 적정 여부
- (3) 배관의 재료를 확인하는 공정
- (4) 배관의 매설깊이를 확인하는 공정

- (5) 배관·가스차단장치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하는 공정
- (6) 배관의 접합부를 확인하는 공정
- (7) 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을 하는 공정
- (8) 그 밖에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

**1.3.3** “일부공정시공감리”란 주요공정시공감리 대상을 제외한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·시공시 해당되는 공정에 대해 확인·감리하는 업무를 말한다. <개정 14.10.6>

## 2. 시공감리기준

### 2.1 시공감리 대상

규칙 제21조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주요공정시공감리 대상 및 일부공정시공감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14.10.6>

#### 2.1.1 주요공정시공감리 대상 <개정 14.10.6>

- (1)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배관(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) <개정 09.12.2>
- (2) 나프타부생가스·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배관(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) <신설 17.1.9>

#### 2.1.2 일부공정시공감리 대상

- (1)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
- (2) 일반도시가스사업자, 나프타부생가스·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,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도시 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2.1.1의 시설을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<개정 09.12.2, 17.1.9>
- (3)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공급관(그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) <개정 09.12.2>

## 2.2 시공감리 방법

### 2.2.1 시공감리 준비

시공감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시공감리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준비한다.

#### 2.2.1.1 공사계획서 작성 및 제출

2.2.1.1.1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감리대상,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이

포함된 연간계획서 및 월별계획서를 작성한다.

- (1) 공사의 종류
- (2) 공사장소 또는 구간
- (3) 공사개요
- (4) 착공 및 완공예정일

2.2.1.2 연간계획서는 매년 2월말까지, 월별계획서는 향후 3개월간(당월 포함 3개월분)의 계획서를 매월 말 10일 전까지 각각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다.

### 2.2.1.2 시공감리신청서 제출

도시가스사업자(시공자)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고 행정판청의 공사계획 승인을 얻은 후(또는 신고를 한 후) 그 승인공문 또는 신고필증 사본(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) 및 공사일정계획표를 첨부하여 시공감리희망일로부터 3일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시공감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.

### 2.2.1.3 공휴일연장근무에 관한 협의

시공감리 신청자는 공휴일 및 연장근무 등의 추가근무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리자와 감리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한다.

## 2.2.2 시공감리 시행

### 2.2.2.1 시공감리자 업무범위 및 의무

2.2.2.1.1 시공감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(1)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
- (2) 시공도면 및 완공도면의 검토
- (3) 시공자의 적법성 여부확인
- (4) 시공확인
- (5) 사용자재 적합성 확인
- (6) 설계변경사항 검토확인
- (7)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
- (8)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2.2.2.1.2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감리원의 부족 등의 이유로 공정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.

2.2.2.1.3 감리원은 공사 진척부분에 따른 감리결과를 감리종료 후 3일 안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한다.

### 2.2.2.2 시공감리 시행방법

시공감리자가 실시하는 시공감리 시행방법은 다음 기준과 같다.

### 2.2.2.2.1 공통사항

- (1) 감리원은 감리일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업무를 시행한다.

- (2) 감리원은 현장입회 전에 기술검토서, 설계도면, 시방서, 사용재료 성적서 등을 숙지하여 공사내용을 미리 파악한다.
- (3) 시공현장이 기술검토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.
- (4)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책임감 있는 시공을 유도하고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현장에서 그 공사를 시공한 공사관계자의 인적사항을 다음 기준에 따라 정확히 파악하여 기록유지한다.
  - (4-1) 감리원은 현장감리 시 발주처감독, 시공관리자, 현장소장, 용접원, PE 웅착원, 굴착책임자, 전기방식 설치자, 비파괴 촬영자 등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한다. <개정 22.1.10.>
  - (4-2) 감리원은 감리 시마다 감리보고 서식에 공사관계자를 기록하고 서명 날인을 받는다.(공사관계자가 전화와 동일한 경우에는 서명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)
- (5) 사용자재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.
- (6) 용접부 비파괴시험을 실시할 때에 입화확인한다.
- (7) 배관의 파복손상여부를 확인한다.
- (8) 승인 또는 신고한 공사계획구간의 변경은 없으나 부득이하여 기술검토서와 상이하게 될 경우에는 시공감리 보고서에 상이한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사유 및 수정도면을 제출받아 처리한다.

#### **2.2.2.2 주요공정시공감리 <개정 14.10.6>**

주요공정시공감리는 1.3.2의 시공과정 및 공정에 대하여 감리원이 공사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이외의 공정에 대하여는 현장설정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. 또한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.

- (1) 감리원은 시공감리 시점을 확인하고 시공감리를 실시한다.
- (2) 감리원은 최종시공감리 실시 전에 시공자로부터 완공도면을 제출받는다.
- (3) 감리원은 비파괴시험 펠름에 대한 재확인(review)을 받았는지 확인한다.
- (4) 감리원은 배관 부식방지 조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.
- (5) 감리원은 배관의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을 실시한다.

#### **2.2.2.3 일부공정시공감리**

감리원은 일부공정시공감리대상 각 항목에 해당되는 공정별 감리업무를 수행하며, 일부공정시공감리 공정 중 다음과 같은 공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장에 입회한다.

- (1)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
- (2) 가스도매사업자 배관의 경우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다음의 배관길이 및 공정
  - (2-1) 배관길이의 20%이상
  - (2-2) 지정된 배관의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및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
  - (3)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 시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
  - (4) 사용자재의 적합성 확인, 안전설비의 성능확인 등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가 필요로 하는 공정
- (5) 사용자공급관(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)의 경우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다음의 배관길이 및 공정
 <개정 11.1.3>
  - (5-1) 배관길이의 30% 이상. 다만, (5-2)에 따른 비파괴 시험 공정 중 건축물 내부에 노출된 배관 및 파이프덕트 내에 설치된 배관의 비파괴시험 공정에 대한 감리는 배관길이의 20 %이상으로 한다.
 <개정 13.10.14>
  - (5-2) 지정된 배관을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및 비파괴 시험 공정

## 2.2.3 시공감리 마무리

### 2.2.3.1 부적합 시 조치사항

감리원은 감리도중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나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다음 서식의 “시공감리 시정통보서”를 발급하고 시공감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며, 지적된 부적합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해당 부분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[시공감리 시정 통보서]

(보관용)

NO.

공사명		감리일자	년 월 일 · 제 차
감리위치			
시공자		시공관리자	
부적합 내용			특기사항
종합의견			감리원 (인)

수령인 :

(서명 또는 날인)

#### 시공감리 시정 통보서

[발급용]

NO.

공사명		감리일자	년 월 일 · 제 차
감리위치			
시공자		시공관리자	
부적합 내용			특기사항
종합의견			감리원 (인)

※ 상기 부적합 내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다음공정의 시공감리를 할 수 없습니다.

### 2.2.3.2 시공기록 보존

시공자는 다음 기준에 따른 각 공정별 시공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자보존한다.

- (1) 비파괴검사 실시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(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 실시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)
- (2) 비파괴검사(용융접합) 실시에 따른 도면
- (3) 비파괴검사 필름
- (4)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
- (5) 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

### 2.2.3.3 시공감리보고서 작성

감리원은 시공감리 후 다음 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다.

**2.2.3.3.1** 감리원은 당일 수행한 감리업무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한다.

**2.2.3.3.2** 감리결과는 기술검토서, 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세부공정별 확인실측한 결과를 보고서에 소상하고 기재하여 적부를 결정한다.

**2.2.3.3.3** 감리결과 특별히 첨부할 필요가 있는 서류는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.

### 2.2.3.4 시공감리필증 발급 및 결과통보

시공감리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시공감리필증 또는 시정통보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행정관청에 통보한다.

**2.2.3.4.1** 시공감리자는 시공감리 업무를 종결한 경우 공사건별 감리결과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시공감리 필증을 발급한다.

**2.2.3.4.2** 최종 시공감리 결과보고(통보)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표 2.2.3.4.2 최종 시공감리 결과보고(통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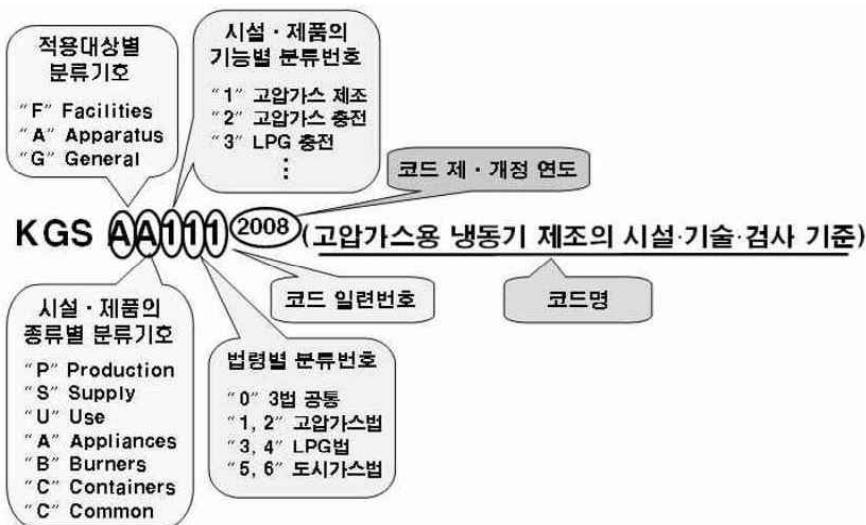
감리결과	행정관청	신청인
적합시	분기별로 취합하여 보고	시공감리 필증 발급
부적합시	분기별로 취합하여 보고	부적합사항 시정통보서 발급

## 2.3 그 밖의 시공감리 기준

기타 감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KGS Code 기호 및 일련번호 체계

KGS(Korea Gas Safety) Code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 · 기술 · 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 ·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.



분류	종류 및 첫째 자리 번호	분류	종류 및 첫째 자리 번호
제품 (A) (Apparatus)	냉동장치류 1	시설 (F) (Facilities)	고압가스 제조시설 1
	배관장치류 2		고압가스 충전시설 2
	밸브류 3		LP가스 충전시설 3
	압력조정장치류 4		도시가스 도매 제조시설 4
	호스류 5		도시가스 일반 제조시설 5
	경보차단장치류 6		도시가스 충전시설 6
	기타 기구류 9		고압가스 판매시설 1
	연소기 (B) (Burners)		LP가스 판매시설 2
	보일러류 1		LP가스 집단공급시설 3
	히터류 2		도시가스 도매 공급시설 4
	레인지류 3		도시가스 일반 공급시설 5
	기타 연소기류 9		
용기 (C) (Containers)	탱크류 1	저장 · 사용 (U) (Use)	고압가스 저장시설 1
	실린더류 2		고압가스 사용시설 2
	캔류 3		LP가스 저장시설 3
	복합재료 용기류 4		LP가스 사용시설 4
	기타 용기류 9		도시가스 사용시설 5
	수소추출기류 1		수소 연료 사용시설 6
	수전해장치류 2		
	연료전지 3		
수소 (H) (Hydrogen)		일반 (G) (General)	기본사항 1
			공통사항 2

KGS GC252 2022



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